

텃밭 운영규약

제1조(목적) : 이 규약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코자 조성한 대방동 미군부대 이전부지 내 주말농장 (이하 '텃밭')의 관리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: 이 규약은 텃밭과 부대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규약준수의무) : 이용자 등은 친환경 텃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이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4조(규약의 효력) : 이 규약은 텃밭을 분양받은 자는 물론,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자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5조(분양기간) : 텃밭의 분양 기간은 분양일로부터 11월30까지로 한다.

제6조(이용자 준수사항)

- ① 화학비료나 농약 등의 사용을 자제한다.
- ② 이웃 텃밭에 피해를 주는 옥수수 등 키큰작물이나, 덩굴성 작물은 심지 않는다.
- ③ 분양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작물을 식재하거나 재배하지 않고, 다음 사람을 위해 주변을 정리한다.
- ④ 본 농장부지는 임차한 토지이므로 작물 재배중이라도 토지주의 반환요청 시 이의없이 즉각 반환하여야 하며, 이때 기 납부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개인사정 상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도 기 납부한 임대료는 돌려받지 않는다.
- ⑤ 텃밭을 임의로 훼손·변경하지 않으며, 제3자에 양도하거나 임대·교환하지 않는다.
- ⑥ 텃밭에서는 취사 및 음주를 하지 않으며, 남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- ⑦ 타인의 텃밭에 심어진 농작물을 훼손하거나 수확하지 않는다.
- ⑧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가 어려울 수 있으며, 주차 시 옆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올바르게 주차한다.
- ⑨ 개인의 실수에 의한 상해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한다.
- ⑩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을 깨끗하게 이용하며, 물을 사용한 후에는 수도꼭지를 반드시 잠근다.
- ⑪ 이외의 별도 지시사항이나 공지사항을 준수한다.

제7조(적용시점) 이 규약은 개장시부터 적용한다.